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정요구·권고

제 목 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적정 및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미흡

기 관 명 울산광역시, ○구, ○○군

내 용

1.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부적정(울산광역시 ○구, ○○군)

「하수도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야 하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울산광역시 ○○○○과는 2014. 12. 11.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부칙에 따라 2015. 1. 1.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례 시행 전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조례 시행 후 변경 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증가한 하수발생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하였고, 같은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량을 전량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며, 하수발생량¹⁾에 단위단가²⁾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하수발생량은 타 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실시설계보고서의 계획 인구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일최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단위단가는 같은 조례 별표7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하며,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인가·허가 신청 시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에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사용승인 전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 전(2012. 12. 7.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하수발생량 및 단위단가에 대한 규정은 동일하고,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며, 준공 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1] 조례 개정 전·후 원인자부담금 관련 규정

구 분	조례 제26조 (2012.12.7. 일부개정)	조례 제26조 (2014.12.11. 일부개정, '15.1.1 시행)
원인자부담금	하수발생량 × 단위단가	변경내용 없음(左同)
하수발생량	준공연도 원단위 적용	변경내용 없음(左同)
단위단가	별표7에 따라 산정(기준연도 없음)	변경내용 없음(左同)
부과·징수 시기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 준공 전 납부	개발계획 허가 신청 시 개산액 통보, 사용승인 신청 시 최종금액 산정 부과, 사용승인 전 징수

※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울산광역시 ○○○○과는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7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단위단가를 아래 [표2]와 같이 공고하였고, 울산광역시는 공고된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
- 1) 준공연도에 해당하는“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일최대)를 기준으로 산정
2) 울산광역시장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공고”시 고시된 단가

[표2] 울산광역시 단위단가 고시 현황

연도	단위단가 적용기간	단가(원/㎡)	공고번호
2014	2014. 7. 1. ~ 변경시	1,421,000	제2014-389호
2012	2012. 6. 1. ~ 2014. 6. 30.	1,344,000	제2012-113호
2008	2008. 4. 1. ~ 2012. 5. 31.	1,088,000	제2008-237호
2007	2007. 3. 1. ~ 2008. 3. 31.	1,032,560	제2007-210호
2006	2006. 3. 1. ~ 2007. 2. 28.	1,009,340	제2006-163호
2005	2005. 3. 1. ~ 2006. 2. 28.	961,680	제2005-107호
	<’05년 이전 고시 단위단가 생략>		

※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부적정(울산광역시 ○구)

울산광역시 ○구 ○○과는 2015. 12. 18.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개발사업 최초 승인시점인 2013년 6월 기준 단위단가 1,344,000원/㎡(’12년 고시단가)에 하수발생량 3,639㎡/일을 곱하여 4,891백만원의 원인자부담금을 준공 전까지 납부토록 통보하였다.

또한 2017. 10. 17. 개발사업 변경에 따라 변경된 하수발생량(3,678㎡/일)을 반영하여 4,943백만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고, 2017. 10. 30.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 전액을 납부하고, 2018. 4. 30.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위 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최초 부과시점은 2015. 12. 18. 로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2015. 1. 1.시행)」 부칙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정 전의 조례가 아닌 개정 후 현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시점의 단위단가(2015년 기준, 2014년 고시 단위단가) 1,421,000원을 적용하여 5,226백만원의 원인자부

담금 개산액을 통보한 후 사용승인 신청 시에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3]과 같이 종전 조례 기준으로 잘못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 개산액 통보 기준 금액보다 283백만원을 과소 부과하였다.

[표3] ○○○○○산단 원인자부담금 재산정 현황

구분	하수발생량 (m ³ /일)	단위단가 (원/m ³)	부과 금액 (백만원)	비고
1차 부과	3,639	1,344,000	4,891	2015. 12. 18. 부과
2차 부과	3,678	1,344,000	4,943	`17. 10. 17. 부과(개발사업 변경)
감사시 재산정	3,678	1,421,000	5,226	개산액 283백만원 과소 통보

※ 울산광역시 ○구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구 ○○과는 현재 조례 기준에 따라 과소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개산액을 다시 산정하여 통보하고, 사용승인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나.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부적정(울산광역시 ○○군)

○○군 ○○○○과는 2014. 11. 27. “○○물류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을 승인하였으므로,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개발계획 승인 시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2014년 고시 단위단가 1,421,000원/톤(2014. 7. 1.부터 정 부합동감사 시까지 적용)에 하수발생량 138m³/일을 곱하여 원인자부담금 196백 만원을 부과하여야 했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2012년 고시 단위단가 1,344,000원/톤을 적용하여 하 수도 원인자부담금 185백만원을 부과함으로써, 타 행위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

담금 11백만원을 과소 부과하였다.

또한 2010. 4. 8. “○○일반사업단지” 개발계획을 승인하면서, 2012. 4. 4. 하수발생량 70m³/일에 개발계획이 승인 시의 2008년 고시 단위단가 1,088,000원/톤을 곱하여 원인자부담금 75백만원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2012. 10. 10.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변경 부과하면서, 하수발생량이 70m³/일에서 68.48m³/일로 줄었으나 단위단가는 아무런 근거 없이 2012년 고시 단위단가인 1,344,000원/톤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 92백만원을 부과하였고, 2013. 2. 20.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액 전액을 납부하였으며, 2014. 7. 10. ○○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되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2. 10. 10.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재부과하면서 변경된 하수발생량 68.48m³/일에 개발계획 승인 시점인 2008년 고시 단위단가 1,088,000원/톤을 곱하여 원인자부담금 75백만원을 부과하여야 했으나, 2012년 고시 단위단가인 1,344,000원/톤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 92백만원을 부과함으로써 타 행위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7백만원을 과다하게 부과하였다.

[표4] 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 부적정 처리 현황

개발사업명	개발계획 승인일자	하수 발생량 (m ³ /일)	단위단가 (원/m ³)	부과일자	부과금액 (천원)	위반사항
○○물류단지	2014.11.27.	138	1,344,000	2014.5.19.	185,665	단위단가 적용 부적정, 11백만원 과소 부과
			1,421,000	감사시 재산정	196,303	
○○일반산업단지	2010.4.8.	68.48	1,344,000	2012..10.10.	92,037	단위단가 적용 부적정, 17백만원 과다 부과
			1,088,000	감사시 재산정	74,506	

※ 울산광역시 ○○군 제출자료 재구성

○○군 ○○○○과는 위와 같이 타 행위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일관성 없이 과소, 과다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지극히 태만히 하였다.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관련 조례 미흡(울산광역시 ○○○○과)

「하수도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야 하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울산광역시 ○○○○과는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7. 7. 15.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정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일부 및 전부개정 하였고, 2014. 12. 11. 일부개정 한 조례를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사용하고 있다.

2014. 12. 11. 일부개정 한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부칙의 규정에 따르면 2015. 1. 1.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례 시행 전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조례 시행 후 변경 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증가한 하수발생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량을 전량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수발생량은 타 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실시설계 보고서의 계획 인구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일최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타 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단위단가는 같은 조례 별표7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별표7에 따라 산정한 단위단가를 변경시마다 아래 [표5]과 같이 고시하고 있으며,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인가·허가 신청 시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에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사용승인 전에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5] 울산광역시 단위단가 고시 현황

연도	단위단가 적용기간	단가(원/㎡)	공고번호
2014	2014. 7. 1. ~ 변경시	1,421,000	제2014-389호
2012	2012. 6. 1. ~ 2014. 6. 30.	1,344,000	제2012-113호
2008	2008. 4. 1. ~ 2012. 5. 31.	1,088,000	제2008-237호
2007	2007. 3. 1. ~ 2008. 3. 31.	1,032,560	제2007-210호
2006	2006. 3. 1. ~ 2007. 2. 28.	1,009,340	제2006-163호
2005	2005. 3. 1. ~ 2006. 2. 28.	961,680	제2005-107호
	<'05년 이전 고시 단위단가 생략>		

※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현재 조례의 이전 조례(일부개정, 2012. 12. 7.)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하수발생량 및 단위단가에 대한 규정은 동일하나,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조례 개정 전·후 모두 하수발생량 산정은 타 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실시설계보고서의 계획인구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일최대)

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울산광역시 관내 구·군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자료를 확인한 결과, 타행위의 계획인구는 상주인구, 상근인구, 유동인구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계획인구 중 상주 및 상근인구만 반영하여 산정하는 경우, 상주·상근 및 유동인구 모두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경우 등 부과 기관 및 담당자 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인구에 상주인구 및 상근인구만 반영하고 유동인구는 반영하지 않은 경우, 상주·상근·유동인구를 모두 반영한 경우 등 조례에서 계획인구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상주·상근·유동인구의 원단위가 서로 다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그리고 조례 [별표7]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단위단가를 변경 시마다 고시하고 있으며, 일선 구·군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동 단위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어느 연도의 단위단가를 적용할지에 대하여는 일부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조례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표6] 조례 개정 전·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시기

구분	조례 제26조 [2012.12.7. 일부개정]	조례 제26조 [2014.12.11. 일부개정('15.1.1 시행)]
부과·징수 시기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 준공 전 납부	개발계획 허가 신청 시 개산액 통보, 사용승인 신청 시 최종금액 산정 부과, 사용승인 전 징수

※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개정 전 조례가 적용되는 개발사업의 경우는 타 행위의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개발계획 승인연도의 단위단가를 적용하고, 2015. 1. 1. 이전 개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하수발생량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부과 시 적용된 단위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2015. 1.

1. 이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하수발생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기존 하수량에 대하여는 기존 단위단가를, 증가된 하수량에 대하여는 변경 시점의 단위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2015. 1. 1. 이후 단위단가를 위와 같이 적용하는 근거는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부칙의 “동 조례 시행 전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조례 시행 후 변경 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증가한 하수발생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정부합동감사 시 일선 구·군에서는 조례 부칙에 있는 단위단가 적용 기준연도에 대한 규정을 본문에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조례에 따르면 타 행위의 개발계획 승인 시 해당 연도의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개산액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개산액 통보는 원인자부담금의 정식 부과가 아니므로 조례 시행규칙에 정한 분할납부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청장, ○○군수는**

[시정]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과소·과다 부과한 원인자 부담금은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여 적법하게 부과 및 환부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장은

[권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계획인구 및 원단위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 단위단가 적용기준 연도에 대한 사항, 개산액 통보 및 분할납부에 대한 사항 등을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여 구·군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